

2023년도 제1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13.(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27)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73건(안전번호 제2023-58831호~6040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58831호~58834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58835호~58844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58845호~58860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58861호~58871호는 블로그, 카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92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2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06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58831호~5883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58831호~5883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8831호~58834호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58835호~5884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58835호~5884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8835호~58844호는 게시물

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58845호~5886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기존에 판매중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좀 더 세련된 기기로 보임.
- 김준근 주임: 해당 기기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번 기기 시연에서 보신 것처럼 최신 기기는 성능도 굉장히 빨라졌음.
- B 위원: 검토보고서의 종합 의견을 보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의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구는 데드카피 안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향후 검토보고서 작성시에는 말씀 하신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58845호~58860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

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8845호~5886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58861호~58871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58861호~5887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8861호~5887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58872호~6040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방송, 영화, 출판/어문, 만화/웹툰, 게임, SW,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58897호(“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2023.05.17.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470포인트에 판매중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59027호(“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2023.06.21. 개봉예정인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40포인트에 판매중임.
 (“Adobe Photoshop 2023”)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60388호(“Adobe Photoshop 2023”)는 2023.03. 출시한 PC용 프로그램으로 웹하드에서 380포인트에 판매중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58872호~6040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

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8872호~6040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58831호~58834호, 제2023-58835호~58844호, 제2023-58845호~58860호, 제2023-58861호~58871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58872호~6040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20.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홍지만